

문화연대 문화정책 월례포럼 _ 10월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를 말하다

-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15:00
- 장소 : 문화연대 강의실

문화연대 문화정책 월례포럼 _ 10월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의 말하다

-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15:00
- 장소 : 문화연대 강의실

프로그램

- 사회 : 최준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발제1.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문화적 권리 : 이동연(문화사회연구소 소장)
- 발제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안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토론 : 박상우(게임평론가), 한상희(건국대 교수)

자료집 목차

- 발제문1.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안 : 이동연(문화사회연구소 소장) _____ 1
- 발제문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안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_____ 13

최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와 문화적 권리

이동연 / (사)문화사회연구소 소장

1.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영화, 만화, 대중음악 분야에서의 '음란물 논란' 이래로 한동안 잠잠했던 표현의 자유 논쟁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7월 국방부는 불온서적 20여권¹⁾을 지정해서 군내에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국방부에서 지정한 분은

- 1) 국방부가 발표한 불온서적 20권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들의 하느님 - 권정생 산문집 / 녹색평론사 / 2008년 개정 증보판 2.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 프레시안 엮음 / 프레시안북 / 2008년 2월 3.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 노암 촘스키 / 한울 / 2007년 10월 4.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리마 / 부키 / 2007년 10월 5.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 오션 / 전상봉 지음 / 시대의 창 / 2007년 10월 6.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작은책 스타가 바라본 세상 / 하종강 외 / 철수와 영희 / 2007년 9월 7. 소금꽃나무 - 우리 시대의 논리 5 / 김진숙 지음 / 후미니스트 / 2007년 5월 8. 정복은 계속된다 / 노암 촘스키 / 이후(서울) / 2007년 2월 9. 대한민국사 세트 - 전 4권 / 한홍구 지음 / 한겨레출판 / 2006년 12월 10. 북한의 미사일 전략 / 전영호 / 육일오 / 2006년 8월 11. 역시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비전향장기수 허영철의 말과 삶 / 보리 / 2006년 7월 12. 꽃 속에 피가 흐른다 - 김남주 시 선집 / 창비 / 2004년 5월 13. 김남주 평전 / 강대석 지음 / 한얼미디어 / 2004년 2월 14. 21세기 철학 이야기 / 21세기코리아연구소 엮음 / 코리아미디어 / 2004년 1월 15. 세계화의 덫 / 한스 피터 마르틴 외 / 영림 카디널 / 2003년 5월 16. 미군범죄와 한미 SOFA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 두리미디어 / 2002년 1월 17. 북한의 우리식 문화 / 주강현 지음 / 당대 / 2000년 9월 18. 지상에 숟가락 하나 / 현기영 지음 / 실천문학사 / 1999년 3월 19. 우리역사이야기 - 전 3권 / 조성오 지음 / 돌베개 / 1993년 9월

서적 리스트들 중에는 노암 세계적인 언어학자 Noam Chomsky, 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 그리고 소설가 현기영씨의 소설 등 대부분 학술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들을 인정받고 있는 책들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어 '사상과 겸열 논쟁'의 시계주를 돌려놓아도 한참 돌려놓은 느낌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군복무중인 학생들에게 도서 반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한 이후에 계획한 것이어서 저서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다분히 낡은 이념의 잣대 속에서 나온 시대착오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 대선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조치 역시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높아 도입 때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3월 12일에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의견을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게시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와 2007대선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실명제 도입을 강화하였지만, 실명제 도입은 선거 기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주제와 사건 모두에 걸쳐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이른바 '악플'을 차단하는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다양한 토론문화를 의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바, 인터넷 민주주의에서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최근 배우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인터넷에서의 '악플문화 근절'로 이동하면서 '사이버모욕죄'를 법제화하려는 정치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위 '최진실법'으로 알려진 '사이버모욕죄' 신설논란은 제제 방식은 인터넷실명제과 다르지만, 인터넷공간에서의 개인의 의사 표현 활동에 일정한 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또한 여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터넷 종량제 역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과 권한을 제도적, 물리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바, 인터넷을 둘러싼 다양한 경로에서의 법적 제제가 일반화할 태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에 대한 셋다운제를 도입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법>법률 개정안도 진행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일정시간(밤12시~새벽6시)에는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인터넷중독, 사이버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차원의 자율적 감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2007년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 게임 이용 방지에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심야의 특정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개정안의 의의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연구와 조사가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었는지가 의문스럽고 반대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정한 시간 규제를 통해서 온라인 게임을 강력하게 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심리적 욕구를 조절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2.

학문·사상·예술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 22조가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표현의 자유는 오래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광범위하게 침해당해왔다. 헌법에 의해 그 존립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정부가 그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모순의 역사는 한때는 파시즘적 정권유지와 분단체제의 이해관계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으로 군림하였고, 때로는 그 역사에 저항하는 역사로 인해 문화예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권리로 생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사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역사와 그 궤적을 같이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역사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장본인임을 지시해 준다. 해방 이후 수많은 문화예술 창작자들은 국가권력의 검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신체적인 구속구금 고문보호관찰에서 창작물의 압수훼손파기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창작자들의 신체적·사상적·감성적·사망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검열은 개인창작자들에게 자행한 기본권 침해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볼권리, 향수할 권리에 대한 박탈이기도 하며, 이는 동시대 문화들의 빙ゴ과 황폐화를 가져왔다.

그 역설과 모순은 권력의 도구의 지속적 재생산으로 인해 대중들의 생존과 문화적 삶의 가치들에 대해 가짜 신념체계를 생산해왔으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그 자체가 권력의 훌륭한 도구가 되어버렸다. 특히나 반공이데올로기, 국가안보주의에 근거한 파시즘적 국가권력 체제 하에서 대중들의 신념체계는 무엇이 사회적이고 무엇이 윤리적인지를 대중들 스스로 반문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기회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이 신념체계는 창작자들에게는 자기검열로 회귀하게되었고, 수용자들에게는 ‘표현의 차이’를 ‘표현의 차별’로 혼동하도록 만들었다. 자기검열과 차이의 차별화를 야기시킨 이러한 무의식적인 동의는 30년 독재체제 시절만이 아니라 문민정부의 출현과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국민의 정부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시민적 보편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침해를 당해왔다. 첫 번째 단계는 전근대적인 풍속과 상식에 근거한 검열의 단계인데, 시기적으로 보자면 70년대 초반까지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근대적 산업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며, 문화적 공공성이 대단히 취약해서 문화적 표현물의 상징들을 모두 실제 사실로 동일시하려는 검열을 수행했다. 예컨대 <풍기단속법> 등의 법률이 강제되던 시절로 볼 수 있다.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사랑의 결말을 부정적으로 노래했다는 이유로 금지당하거나, 이미자의 「동백꽃 아가씨」의 멜로디가 왜설적이라는 이유로 역시 금지당했다. 소위 ‘풍속의 검열’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현실을 너무 부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묘사한 때문인데, 이는 본격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기 이전에 국가의 가부장주의적 검열의 유형을 보여준다. 물론 이 경향은 7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낭만주의적 경향의 족물적으로 검열했던 과정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구현, 독재정권의 타도, 분단체제의 해체라는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은 이념적, 정치적 검열의 단계로서 80년대 말까지 지배적인 검열의 경향이다. 김지하의 『오적』에서부터 황석영의 『객지』,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신학철의 『모내기』, 흥성당의 걸개그림 등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했던 창작물들 중 대부분이 정치적, 이념적 내용을 담았던 창작물이었다. 소위 ‘이념의 검열’은 한국 사회 변혁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운동을 억제하려는 국가의 방어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파시즘적 독점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재생산하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중을 향한 정서적 검열로 확장되었다. 이른바 「국가보안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이적표현이란 조항들은 상징적, 은유적, 창작표현들을 자의적으로 억압하는 절대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이념적 표현의 자유에서 성표현의 자유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들어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정치적 검열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특히 성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장선우의 『거짓말』,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그리고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까지 지금의 검열은 소위 ‘음란물’에 대한 검열이었다. ‘성의 검열’로 집약될 수 있는 최근의 검열은 특히 성적 욕망과 성보호,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나 ‘청소년의 보호’나하는 이분법을 조장하면서 성적 표현의 주제와 소재 모두를 규제하고 있다. 물론 ‘풍속의 검열’, ‘이념의 검열’, ‘성의 검열’의 구분은 단계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시대의 지배적인 검열 경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다.

풍속의 검열이건, 이념의 검열이건, 성의 검열이건 검열은 모두 정치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검열은 소수의 검열로 인해 다수에 대한 무의식적 집단 관리를 생산할 수 있는 폭력적인 표상의 정치이자, 검열당한 주체들 스스로에게 자기통제를 강제하는 마음의 감옥이다. 정치적 효과는 실제 정치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의 본래 목적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생산하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념의 검열만큼이나, 풍속의 검열, 성의 검열은 오히려 정치의 검열보다 더 정치적인 효과를 생산한다.

특히 97년 '청소년보호법'²⁾의 등장으로 성의 검열, 음란물에 대한 규제³⁾가 본격화되는 최근의 문화정세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검열의 새로운 단계가 도래했음을 알려준다. 2000년부터 대중문화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들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했다. 2000년 초 영화 『거짓말』이 음란물 시비에 휘말리면서 '음대협'(음란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가 하면, 이현세 만화 『천국의 신화』 소년판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300백 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최근에는 영화 『공동경비구역』이 JSA 전우회로부터 각각 사실을 왜곡하고 부대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했다는 이유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고, 9월 29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페미니즘 아티스트 그룹 '입김'의 <종묘점거 프로젝트 전시회>가 이씨 종친회와 유림단체들의 항의에 전시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몇칠 전에는 소설가 장정일씨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작가를 구속시켰던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판결했다. 작년에는 엽기기수 '싸이'의 데뷔앨범이 청소년판매불가 판정을 받고, 박진영의 『게임』이란 음반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조장시킨다는 이유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문화계와 그것의 현실 왜곡과 파급효과를 우려

- 2)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행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법 취지에는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되어있다.
- 3) 청소년보호법의 등장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 음란, 폭력만화의 불법 복제 등 불량만화 1700여종 510만여권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97. 7. 15). 각 방송사 연예인의 복장과 행동을 규제(의상, 염색, 악세사리 규제, 97. 7.).
 - 재야단체 간행물인 <서울청년> 8호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97. 8).
 - 조 PD 음반 <조PD 인 스타덤> 청소년 유해판정 판매금지 결정(99. 3).
 - 가수 김진표씨 곡 <추락>이 근친상간의 내용을 담은 이유로 공진협(한국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99. 5).
 - 일본 소설가 하나무라 만계초의 <게르마늄의 밤>에 대해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노골적인 성묘사, 동성애, 청소년 성 접촉 등 10여군데가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99. 6).
 - 연극 <로리타>의 여고생 알몸연기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출자등 연극 관계자들의 사법처리(99. 11).
 - 영화 <거짓말> 제작자와 개봉극장주들이 음대협에 의해 음란물 제작배포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당함(2000. 1).
 - DJ. DOC 5집 <The Life..... DOC BLUES>가 한국영상물등급 위원회로부터 사회고발적인 직설적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2000. 5).

하는 문화적 보수 집단과의 갈등은 사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음대협은 청소년보호가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며, 'JSA전우회'는 자신의 마크와 복장을 그대로 도용하여 현실에도 없는 일들을 사실처럼 묘사했다고 실력행사를 했고, 이씨종친회는 성스러운 종묘를 방자한 여성들이 유린했다고 역정을 냈다.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제를 가하려는 입장들은 과거 정치적 보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관행과는 달리 성적 보수주의, 종교주의, 군사주의, 가부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어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인 무지를 떠나서 그동안 별다른 제지없이 자신들의 이념과 윤리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근대적 지배집단의 공포심과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적 표현물이 청소년들을 망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급속도로 해체되어 자신들의 반공이념과 기득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들의 도전이 갈수록 거세져 남성사회 체제를 혼란에 빠뜨릴지 모른다는 공포심 등이 문화적 표현물들을 단순히 허구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어쨌든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세 가지 역사적 유산들이 한꺼번에 축적된 느낌이다. 특히 개인의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를 통제하려는 조치들은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바도 크다 할 수 있다. 인터넷실명제나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 도입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충분한 문화적 토론 없이 무리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과감하게 하지 않았다. 또한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 작성은 지난 정부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검열방식이어서 전반적으로 일련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사례들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제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창작자의 창작표현에 대한 검열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문화적 권리가 제한한다는 데 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도 창작자에게 일정한 제제를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는 병사들에 대한 책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역시 익명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통제방식이다.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 역시 게임이용자들에 대

한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작자에서 수용자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이동한 것은 검열과 통제의 대상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소수의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자기 결정대로 향유할 권리를 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 표현의 자유 논란은 개인들의 일상의 문화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 각각의 사례들의 쟁점들은 검토하면서 문제들을 공론화해보자.

3.

앞서 말했듯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 인터넷 실명제(혹은 사이버모욕죄), 청소년 게임이용 셋다문제는 모두 창작자들에 대한 통제가 아닌 수용자, 이용자에 대한 통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는 각기 다른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갖고 있어 보인다. 먼저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는 “안보이데올로기의 호명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사례이다. 사실 이번 사례는 한총련 학생들이 벌인 군내 독서반입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벌인 국방부의 헤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른바 국방부의 안보론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가 발표되고 나자 리스트에 올린 책들이 적지 않은 상업적 홍보의 덤을 얻게 되어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모 인터넷 서점에서는 국방부 불온서적 리스트를 별도로 섹션화해 판매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 중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은 상당한 판매효과를 보기도 했다. 일부 출판업자들은 우스개 소리로 리스트보다 더 강한 불온서적이 포함이 안 된 것을 의아해하면서 혹시 국방부와 출판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는 세간에 화제가 되었고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새로운 유형의 “안보상업주의”만을 부추겼다는 네티즌들의 패러디와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이러한 생각들을 미리 예상하지 않았나? 아니 이들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인가?

사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아주 명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먼저 불온서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든 않하든 국방부의 안보론자들은 언제나 이미 체제를 비판하는 모든 책은 불온서적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가 여부에 달려있는데, 과거 군부정권시절에는 국방부가 굳이 나서서 불온서적 리스트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간행물윤리위원회도 하지 않는 일을 출판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국방부가 불온서적 리스트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불온서적 리스트를 직접 작성할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 불온서적에 대한 일상적 통념의 잠재성을 지금 이 시점에서 현실화한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황을 정리하면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1) 한총련 행동에 대한 대응 차원 2) 정권교체에 따른 국방부의 안보이데올로기의 강화 차원 3) 촛불정국을 포함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외부적 효과 차원

불온서적 리스트를 보면 이 조치들이 정확한 기준과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출판관계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또한 선정의 모호함과는 달리 선정된 리스트를 보면 과거 불온서적 리스트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맹스-레닌의 원전들은 하나도 없고, 대신 최근 신자유주의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서적들이 눈에 띈다. 한미관계, 대북관계 관련 서적들이 포함되는 것 못지 않게 세계화, 자본주의 체제에 비판하는 학술서적들도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문화적 예술적 특수성과 의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책 제목이나 외형적인 취지만을 가지고 판단한 사례들도 눈에 띈다. 말하자면 이 정도 수준의 책들이 불온서적으로 선정되었다면 사실 과거보다 훨씬 더 검열이 강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선정의 기준 자체에 어떤 전문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 사건은 국방부 내에서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초치로 존재하지만, 실제 외부에서는 하나의 헤프닝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사례가 특정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열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이데올로기가 호명하는 무의식을 읽을 수 있다. 안보이데올로기의 무의식은 검열의 기준, 상황, 시기의 합리성을 언제나 무력화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인터넷 통제 조치는 가장 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모욕죄나 모두 게시판에 댓글을 남길 때 책임 있는 네티즌들의 자세를 촉구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사이버 윤리의식,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네티즌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인터넷 실명제는 명시적으로는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문화에 대한 일정한 제제를 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실명제가 악플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실명으로 글을 남기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악플을 달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실명에 의한 성찰적 행동에 대해 기대할 수도 있다. 물론 실명제가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삼가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보지만, 악플의 생성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부족할 뿐아니라 인터넷 문화의 원리상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다. 실명제는 인증제와도 다르게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본인의 실명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다. 이른바 로그인 자체가 실명이 아닌 사이버 이름인데, 로그인 한 상태에서 다시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심리적 방어기제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실 악플문화는 실명제와 익명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악플을 권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또한 인터넷에 대한 문화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크며 이는 실명제와는 근본적으로 무관한 문제이다. 물론 실명제가 악플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고 잠재적 가해자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명제를 전면도입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너무 많고 인터넷에서의 비판적 토론풍화의 위축을 일으킬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실명제 도입에 대한 도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의 권리에 대한 가장 일상적인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청소년 게임이용 셧다운제도 사회적 강제에 의해 청소년의 문화적 향수와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사례보다도 심각한 문화권 권리의 침해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객관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가하는 데 있어 확실치가 않다. 가령 같은 게임이라하더라도 온라인 게임 방식은 밤12시 이후에서 새벽6시까지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수 없지만, 비디오게임은 자

유롭게 할 수 있다. 문제는 게임의 성격과 시간에 관계없이 이 제도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제제를 할 수 없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발상이다. 또한 실명 등록에 대한 자의적인 변경을 안제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청소년 게임셧다운제는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청소년 게임이용셧다운제는 1) 청소년들의 문화적 향수 권리에 대한 제한 2) 학습주체로 청소년들을 대상화, 3) 게임내용규제가 아닌 시간규제의 문제, 4) 게임의 사회적 편견의 강화라는 문제들을 낳는다.

실제로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시간은 성인들의 게임이용시간에 비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평일 게임 시간		주말 게임 시간	
	평균	응답자	평균	응답자
10 대	105.71 분	222 명	178.20 분	255 명
20 대	179.39 분	304 명	217.89 분	328 명
30 대	155.44 분	87 명	210.70 분	93 명

[표] 연령대별 게임이용시간

[김성윤, '화폐경제와 게임세계, 아이템 현금거래의 문화', 게임문화이론강좌, 2008,7월 참고]

또한 심야에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얼마나 이용하는 빈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심야에 공부를 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셧다운제를 만들었다. 만일 청소년들이 이 시간대에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신체발육을 위해 공부 그만하고 수면을 취하라도 말할 수 있을까? 공부는 되고 게임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결국 공부와 게임 자체의 내재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공부와 게임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논리에 있다.

최근에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사례들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2005년 갤럽이 전국의 1000여명의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실명제를 찬반여론조사에서 4명중 3명이 찬성했다는 결과가 있고, 2007년 4월 <게임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청소년게임이용 셧다운제 역시 75% 정도가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규제안에 대한 찬성(53%)이 반대(35%)보다 앞섰다. 결국 네티즌들이나 대중들 스스로 인터넷에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 게임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중적 의사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본래의 규제도입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의 논리를 대중적으로 설득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창작자들의 교유한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문제제기 자체를 부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중적 설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불온서적 리스트나 인터넷실명제, 청소년 온라인게임이용 셧다운제는 법적인 제제가 아닌 사회적 컨센서스에 의해서 대중들의 담론 공간에서 논의되어야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과 제도의 한계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화적 감성적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안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 인터넷의 특성과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매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이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이는 인터넷이 가장 민주적인 매체인 근거이지만, 역으로 인터넷 내용규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규제의 범위가 넓다. 신문, 방송 등 다른 매체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전문 생산자와 표현물을 ‘중앙집중적’으로 출판(publish)하는 매체를 주된 규제대상으로 한다.
- 인터넷에서는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날 것 그대로의, 거칠은, 때로는 부정확한, 때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 그대로 표출된다. 이는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용된다. 그러나 거친 표현이 모두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불법적인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의 경계는 모호하다.) 부정확한 사실의 표현이 모두 유언비어의 유포(를 의도한 것)는 아니다.
- 사적 공간/공적 공간 :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이용자들에게 (법

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에서) 사적 공간인 동시에 공적 공간이다. 메일뿐만 아니라, 예컨대 미니홈피나 커뮤니티와 같이 (가능성 측면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사적인 소통을 한다. 욕설 등과 같은 거친 표현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유통(연예인 A가 B랑 사귄대와 같은)은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의 방식이며, (고운 말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온라인의 어떤 공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소통한다. 물론 이러한 사적인 소통이 특정한 경우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이해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 법적 규제/자율 규제 : 법적 규제는 인터넷 공간을 균질적인 공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실명제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 공간은 다양하며, 그만큼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각자 혹은 함께 운영에 관여한다. 각각의 커뮤니티는 각자의 현실에 맞는 운영 원칙과 기술적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예컨대 익명으로 운영되어도 예의바른 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도 있고, 남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성별 확인을 원하는 커뮤니티도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내 맘에 안들면 삭제한다"라는 운영 원칙을 채택할 수도 있다. 특정 커뮤니티의 운영 원칙이 맘에 안들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커뮤니티를 찾아도 된다. 물론 '불법 표현'에 대한 법의 개입은 불가피하겠지만, 내용 규제 정책은 개별 커뮤니티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접근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반론이나 토론 역시 가능하다. 이는 인터넷 내용 규제의 수준이 여타 매체에 비해 낮아져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이 실시간으로 복제, 전파되기도 쉽다. 이는 인터넷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 익명성/통제 가능성 : 인터넷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다고 해도 본인임을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또 한편으로 인터넷은 판옵티콘이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적은 기록된다. (포털이 가입할 때 받는 개인정보 외에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지 상상해보자. 내 메일, 커뮤니티에 올린 글 목록, 지식인에 올린 글 목록, 쇼핑몰 구매 목록, 가입한 커뮤니티, 친구 관계 목록 등등등) 이에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이 결합되면 개개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내용 규제는 일정하게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엄격한 성인 인증은 일정 수준의 본인 식별을 전제로 한다. 청소년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 현행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와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하여 많은 비판이 있지만, 사실 그러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 현재의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는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의무대상 사이트는 공공기관 및 주요 포털, UCC 사이트, 인터넷 언론사 등 37개 사이트이다.

○ 표현의 자유는 원래 '익명표현의 자유'다. 국가가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현이다.

○ 현행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조방식의 본인 확인 방식을 인정

함으로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을 부추기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수단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이를 주민등록번호 대조방식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이를 금지할 경우 본인 확인 자체가 까다로워져 인터넷 이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고집하기 위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 실명제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이용자 통제를 야기한다. 본인확인 정보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IP 추적이나 여타 정보를 통해서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실명 정보는 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영장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면 되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이용자들조차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 근거한 것인데, 쟁점은 '실명제 vs 익명제'가 아니라,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vs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이다.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는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 실명 게시판, 익명 게시판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구분이다. 완전 익명 게시판, 본인확인은 하지 않지만 글을 쓰기위해 id가 필요한 게시판, 이를 주민등록번호 대조방식의 본인확인 게시판, 개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게시판 등 익명/실명 정책에 따른 스펙트럼도 다양하며, 덧글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덧글을 바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또 한번 클릭해야 볼 수 있는지 여부, 블로그나 위키 방식의 도입, 운영 정책 등 개별 커뮤니티가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은 무궁무진하다. 개별 커뮤니티에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이 적합한지는 각 커뮤니티가 가장

잘 안다. 포털 사이트 내에도 수만, 수십만의 커뮤니티와 게시판이 존재한다. 개별 커뮤니티의 특수한 상황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왜 정부가 특정한 게시판 시스템/정책을 강요하는가?

2)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⁴⁾

4)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하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개정된 법규정이 이어져온 것인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받아왔다.

-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시행령 16조가 모두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인용해보자.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견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 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 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야는 아니되고, 부득이 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 - 예컨대 아동포르노, 국가기밀누설,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 이 아닌 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위헌판결 후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가능한 불법정보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나, 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이 국가권력에 의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는 최근의 사례가 보여준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58건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심의위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광고주 불매운동을 불법적인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 역시 불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제44조의 7 1항 1호에서 8호까지 열거된 불법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례는 정부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임의로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 불법정보 기준의 불명확성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 상 표현이 사법적인 판단없이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궁극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소원청구서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행정기관의 위법성 판단은 형식적으로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잠정적인 것입니다.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이 아닌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나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의해 표현을 제약하는 것은 표현/행동을 구분하여 표현을 더욱 두터이 보호하는 헌법원리상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적인 위법성 판단에 불복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국민들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눈치를 계속 보거나 아예 표현물의 표출을 포기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후심의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의 사후심의에 대해서는 사전제재(prior restraint)라는 사전검열 보다 더욱 폭넓은 개념에 포함시켜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경신,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인권과 정의 2002년 8월호)

이런 점에서 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는 그 자체로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검열체계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해야 합니다."

3) 임시조치 제도

- 인터넷 상의 표현이 실시간으로 복제, 전파되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는 절차 및 판단 주체 등에 있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

면 자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1항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외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게시자가 추후에 법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 현행 임시조치 관련 조항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정도의 절차(notice & take down)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저작권법은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하면 즉시 그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복제·전송자와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를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임시조치 될 경우 해당 게시자조차 게시물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게시자는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게시자가 임시조치 등에 대해 이의신청 혹은 소송 등의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임시조치가 될 경우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은 이 부분을 보완하였다.) 임시조치될 경우 게재자에게 알리고, 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현행 저작권법과 같이 해당 정보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기관(개정안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되어야 한다. 즉,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의 심의 결정

이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및 개정안은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모호한 상태인데, 만일 표현물에 대한 삭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없이 게재자의 표현을 궁극적으로 제약하는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에서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1) 촛불시위와 인터넷 통제

○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광우병 괴담'론을 제기했으며, 수사기관은 관련 게시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5월 경찰은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2MB 탄핵 서명 운동이나 광우병 관련 글을 쓴 21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을 했고,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적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뢰저해사범 전담팀'을 구성하고, 게시글이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사법처리한다고 위협했다. 당시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수돗물 공기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했다' '5월 17일 중고등학생 동맹휴업하자' '수도 민영화된다'는 등의 주장이었으며, 이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이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 사실 수사기관의 의도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chilling effect)시키는 데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관은 "5월 17일 동맹휴업"을 제안한 19세 청소년을 학교 영업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는데, 이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한겨레21에 의해 밝혀진 정부 회의 문건(5월 9일, 부처대변인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부 홍보지원국에 '인터넷 조기대응반'이라

는 이름의 비공식 조직이 꾸려지는가 하면, 포털사이트들이 잇달아 세부조사를 통보받았다고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포털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대통령을 비하하는 언어를 쓰지 말라며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린 바 있는 등 정치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명박을 빗대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촛불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메이저 보수 언론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일고 있는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하여 전방위로 압력이 이루어졌다. 방통심의위는 7월 1일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물 58개를 불법적인 '영업방해'라며 삭제를 권고했다. 방통심의위 결정 후 직접 심의대상이 되지 않은 비슷한 다른 게시물들도 광범위하게 삭제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이션에 대하여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관련 활동을 벌인 네이션에 대하여 고소할 것을 관련 기업에 권유하는 한편(7월 15일 농심 기자회견) 7월 8일 네이션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15일 가택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2)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올해 초 발생한 옥션 해킹으로 인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하나로 텔레콤의 개인정보 남용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동시에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근거로 인터넷 내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 이 종합대책은 지난 9월 1일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전부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대책, 보안 강화 대책, 포털에 대한 규제대책, 내용 규제 정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규제 정책 외에도 민간 네트워크나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내용 규제 관련 독소조항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관련 조항(제119조, 제145조 제1항 17)이다.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처벌조항은 두지 않았지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제공자를 콘텐츠의 중립적인 전달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일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여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한다면, 서비스제공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여부가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서비스제공자들은 이용자 보호나 서비스 품질의 관리를 위해 인권 침해적 표현, 악성 바이러스, 명백한 불법적 표현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며,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면책의 요건을 설정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ISP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230조), 이는 ISP가 선의로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것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되, ISP를 발행자(publisher)나 발언자(speaker)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중립적 전달자(neutral carrier)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다.

○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제119조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제작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5조 제1항 17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19조 7항(현행 제44조의 2 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 만일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근거가 없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감수하는 것이다.

만일 개정안과 같이 이를 '의무' 조항으로 한다면, 서비스제공자는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삭제요청만 있으면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미 현행 법 하에서도 사업자들의 자의적인 삭제나 임시조치는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유 이물질 등 소비자 고발성 게시물뿐 아니라 아לנד 사건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한 게시물 등 주로 기업비판적인 의견들이 해당 기업의 '명예훼손'이라는 주장 하에 무차별적으로 삭제되는 등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층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 또한 전부 개정안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토록' 하고 있다. '임시조치'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단 7일만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통심의위는 법적 판단의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수많은 심의 업무를 해야하는 방통심의위에서 단 7일 만에 판단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3)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확대

○ 촛불집회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할 계획을

밝혀 왔으며, 지난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25일 법무부는 '인터넷 유해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현재 일일접속 이용자 20만명(인터넷 언론), 30만명(포털, UCC사이트) 이상에만 적용되던 인터넷 실명제를 10만명 이상 접속하는 모든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37개에서 17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번 개정은 지금 까지 시행된 강제적 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나 실명제 확대의 근거조차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 최진실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더욱 밀어붙이고 있는데, 고 최진실씨 자살사건과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사이의 연관 관계 역시 찾을 수 없다.

4) 사이버 모욕죄

- 사이버 모욕죄는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밝힌 이래 정부와 한나라당 인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고 최진실씨 자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의 요지는,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하여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처벌 수위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인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존재한다. 즉, 이미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대해 당사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은 당사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 그러나 무엇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인지는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다. (무엇이 '악플'인가 역시 미찬가지다.) "쥐박이는 무뇌아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 "MB는 머리

가 나쁘다"는 어떤가?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가 나쁘신 것 같아요"는? 명확한 기준없이 수사기관이 불법여부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표현 행위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처리의 위험이 없는 최소하도로 글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입법이다.

- 수사기관이 인터넷 상의 모든 악플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을까? 과연 찌질이들의 악플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는 결국 정부 비판적인 표현을 최대한 자의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4. 대안

- 현행 내용규제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안을 마련하여, 민주당을 통해 발의할 예정이다.

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에서 "등"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한 표현물"인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저작권법에 의해 규율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제44조, 제44조의2 제1항)

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처리절차를 저작권법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처리절차와 같은 방법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규정함(제44조의2)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事實을 소명하여 임시조치를 요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소명자료의 유무만 판단하고 권리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를 정보게재자에게 통지. 정보게재자는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정보게재자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함.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일단 해당 정보를 다시 게시하고, 게시물 사본과 함께 권리주장자의 소명자료, 정보게재자의 이의자료 등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함.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위법성을 판단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해 다시 임시조치를 함. 이후 정보게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이의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따름.

다.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하는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관리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분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관리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위원회는 당해 사건 기록 일체를 법원으로 이관하고, 이의신청이 제출되는 때에 권리주장을 가처분 신청인으로, 정보게재자를 가처분 피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봄(제44조의11, 신설).

마.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제를 폐지함(제44조의5)

바. '불법정보' 중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와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함(제44조의7)

○ 앞서 지적했듯이,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 거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행정기관이 위법성을 판단하여 표현물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불법정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은 사법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의 속성상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여러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번 개정 제안에서는 제외되었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을 할 예정이다.

○ 인터넷의 자율성, 자정능력

인터넷 내용 규제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법적 규제의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터넷의 자율성, 혹은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저 '공자님 말씀'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자율성, 자정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네티즌들이 점차 네티켓을 지킬 것이라거나, 문화적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믿음은 아니라고 본다. 악플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힘들지언정, 악플 현상(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댓글)은 분명 인터넷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소외나 증오의 감정의 표출일 것이고, 무한경쟁 신자유주의 체제가 심화되는 한 그러한 감정이 완화될 것이라고는 오히려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의(운영자나 이용자나) 인터넷 경험이 축적되면서, 인터넷의 특성에 대한 이해(예를 들어 자신의 글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같은)가 깊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악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든가, 사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조심하게 된다든가하는 문화적인 적응 혹은 커뮤니티를 위한 적절한 정책적인 지침이나 기술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 등이다.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공간이 있고, 개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저마다 다르다. 그리고 개별 공간(커뮤니티)들은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만 운영자가 아니라, 포털 내의 커뮤니티, 개별 홈페이지, 혹은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주체도 저마다의 영역의 운영자고, 자신의 공간을 기획한다. 어떤 홈페이지는 익명 게시판을 운영하다가 쓰레기글들의 범람으로 인증 게시판으로 바꿔보기도 한다. 실명 게시판을 운영하다가 게시판이 썰렁해져서 다시 익명성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덧글 기능을 폐쇄할 수도 있고, 트랙백을 통한 소통을 선호할 수도 있다. 진중권씨처럼 악플들을 모았다가 일시에 날려버리는 장난을 칠 수도 있다. 악플이라도 환영하는 블로그 운영자도 있을 수 있다. 포털과 같은 사이트는 '평판 (reput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질의 글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악플에 대한 접근은 제약할 수도 있다.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자율성, 자정능력은 공문구가 아니라, 인터넷 초창기부터 이루어져왔던 자율적인 문제해결 과정의 진화를 표현한 것일 따름이다. 인터넷 상의 각각의 공간은 다 다르다. 그러나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악플을 막는 단일한 기술 시스템을 주장한다면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게 된다. 개별 공간마다 특성과 문제가 다 다른데,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왜 단일한 해결책을 외부에서 강제하려고 하나. 자율성, 자정능력은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까?